

주식취득 인가신청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	30일
상대회사	대표자 성명	생년월일	
	주소		
	상호	전화번호	
	소재지		
신청인	대표자 성명	생년월일	
	주소		
	상호	전화번호	
	소재지		

주식취득 예정 연 월 일

「전기사업법」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기사업자의
주식취득 인가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

첨부서류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주식취득 계약서 사본 등 주식취득의 증명서류 2. 주식을 취득하려는 자 및 전기사업자 등의 다음 각 목의 자료(가목 및 나목은 법인만 해당한다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정관 나. 주주 현황 다. 사업 현황 3. 주식취득의 목적 및 사유에 관한 자료 4. 「전기사업법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5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전기사업자의 경영에 대한 영향력 행사 계획(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) 5. 주식취득 후의 사업계획서 6.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에 사업을 개시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영 제5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) 1부 	수수료 없음
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 확인사항	주식을 취득하려는 자 및 상대회사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(주식을 취득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	

처리절차

